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정 내용	시설		
	장비		
	인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